

**부속서 I의 부록 1**  
**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**

**주석 1**

이 목록은 부속서 I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모든 상품이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는 요구조건을 규정한다.

**주석 2**

2.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상품을 기술한다. 제1열은 HS에서 사용되고 있는 류, 호 또는 소호를 기재하고, 제2열은 류, 호 또는 소호에 대한 HS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설명을 기재한다. 제1열 및 제2열의 각 기재내용에 대한 규정은 제3열 또는 제4열에 기재된다. 제1열의 기재사항이 “ex”로 시작하는 경우, 이는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이 제2열 아래에 기술되지 아니한 류의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

2.2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3열 및 제4열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, 수출자는 제3열 또는 제4열에 기재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. 원산지 규정이 제4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제3열에 기재된 규정이 적용된다.

**주석 3**

3.1 원산지 지위를 취득한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상품에 관한 부속서 I 제5조의 규정은 원산지 지위가 이 상품이 사용된 공장 내에서 취득되었거나 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.

3.2 이 목록의 규정은 요구하는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. 반대로 규정 이하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 따라서 규정에서 비

원산지 재료가 제조의 특정한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, 그 재료의 사용이 특정 단계보다 이전 제조단계에서는 허용되고, 그 재료의 사용이 특정 단계보다 이후 제조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
3.3 주석 3.2를 저해함이 없이, 규정이 “모든 호의 재료”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, 해당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, 상품과 같은 호의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. 그러나 “...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제조”라는 표현은 목록의 제2열에 기재된 상품의 기재사항과 다른 상품과 같은 호에 분류된 재료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3.4 목록의 규정이 상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,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. 이 규정은 모든 재료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.

3.5 목록의 규정이 상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제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, 이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당연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.

3.6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가능한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에 대한 두 개의 비율이 기재된 경우, 이 비율들은 합산될 수 없다. 즉,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은 기재된 비율 중 높은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또한, 개별 비율은 해당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와의 관계에서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.

3.7 목록 제50류 내지 제60류의 규정에서 “적어도 두 개의 예비 또는 마무리 공정”이라 함은 누임, 표백, 머서화 가공, 다림질, 표면을 긁어 세우기, 캘린더가공, 주름방지 가공, 열 고정, 주름제거 후 평평하게 광택 내기, 침투, 보수 및 실밥 제거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.